

2005年度 鷄龍市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년월일 : 2005. 4.

제 출 자 : 계 룡 시 장

1. 提案 事由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척지와 근린공원지를 매입 주차장과 화요장터 및 체육공원을 조성(설치)하고, 금암동 인구증가에 따른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근린공공시설 부지매입과 이미 의결된 두마면사무소 분소 건물을 지하1층, 지상1층에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변경과 관련하여
- 「2005년도 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함

2. 管理計劃 變更內譯

재 산 현 황				건 (필지,동)	면 적 (㎡)	예정가액 (천원)
구 분	종류	사 업 명				
취	소 계			1(1)	727	1,004,000
	건 물	①두마면사무소 분소 신축	당 초	1(1)	430	580,000
			변경(중)	1(1)	297	424,000
	소 계			2(25)	29,608.3	8,365,400
득	토지	①금암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		1(1)	998.3	453,600
		②엄사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부지매입		1(24)	28,610	7,911,800

3. 參考事項 : 관계법령발췌(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2005年度 鷄龍市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2005년도 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 2005년도 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부

關 聯 法 令

□ 地方自治法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改正 1994. 3. 16, 1999.8.31>

1. 條例의 制定 및 改廢
2. 豫算의 審議 · 확정
3. 決算의 승인
4. 法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使用料 · 手數料 · 分擔金 · 地方稅 또는 加入金の 賦課와 徵收
5. 基金의 設置 · 運用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 · 처분
7.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置 · 처분
8. 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豫算의 義務負擔이나 權利의 포기
9. 請願의 受理와 처리
10. 外國 地方自治團體와의 交流協力에 관한 사항
11. 기타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사항외에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議會에서 議決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地方財政法

第77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管理計劃에 포함하여야 할 公有財産의 범위 및 管理計劃의 작성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管理計劃에 따라 公有財産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審査 · 分析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9.1.21>[全文改正 1994.12.22]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1995.5.16, 1996.4.27, 1998.7.16, 2000.10.20, 2002.11.29>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5.16, 2000.10.20, 2001.9.15, 2002.11.29>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
[적용 2003.1.1부터]
5. 삭제 <2002.11.29>
[적용 2003.1.1부터]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 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4.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
1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미리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익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④제2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5.5.16>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한다.

<개정 1999.4.30>

2005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總括表

(단위 : 필지,동,m²,천 원)

구 분			당 초 분(A)			변 경 분(B) (증가)			합 계(A+B)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토 지	2건	222,381	16,100,000	2건	29,608.3	8,365,400	4	251,989.3	24,465,400
		건 물	4건	6,745	8,730,000	1건	297	424,000	5	7,042	9,154,000
	신 축	토 지	2건	222,381	16,100,000	2건	29,608.3	8,365,400	4	251,989.3	24,465,400
		건 물	4건	6,745	8,730,000	1건	297	424,000	5	7,042	9,154,000
처 분	계	토 지	2건	29,858.1	8,365,400	-	-	-	2건	29,858.1	8,365,400
		건 물	1건	727	1,003,986	-	-	-	1건	727	1,003,986
	매 각	토 지	2건	29,858.1	8,365,400	-	-	-	2건	29,858.1	8,365,400
		건 물	1건	727	1,003,986	-	-	-	1건	727	1,003,986

取得對象財産目録

1. 사무실(건물)신축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취득대상 수 량 (건축면적)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대상자	비 고
	구 분	소 재 지						
기 존	4건		4건 (6,745)	8,730,000				
	1	금암동 10	1건 (2,582)	3,400,000	2005	청 사 증 축	계룡시장	기 승인
	2	금암동 7-1	1건 (2,741)	3,500,000	2005	도서관신축	계룡시장	기 승인
	3	두마면 왕대리 산17-1	1건 (992)	1,250,000	2006	소방파출소 신 축	계룡시장	기 승인
변 경	소계		1건 (727)	1,004,000				
	4	두마면 엄사리 278-3	당초 1건 (430)	580,000	2005		계룡시장	기 승인
			변경 1건 (297)	424,000	2005	두마면 분소 신 축		금액 : 424백만원증 면적 : 297m ²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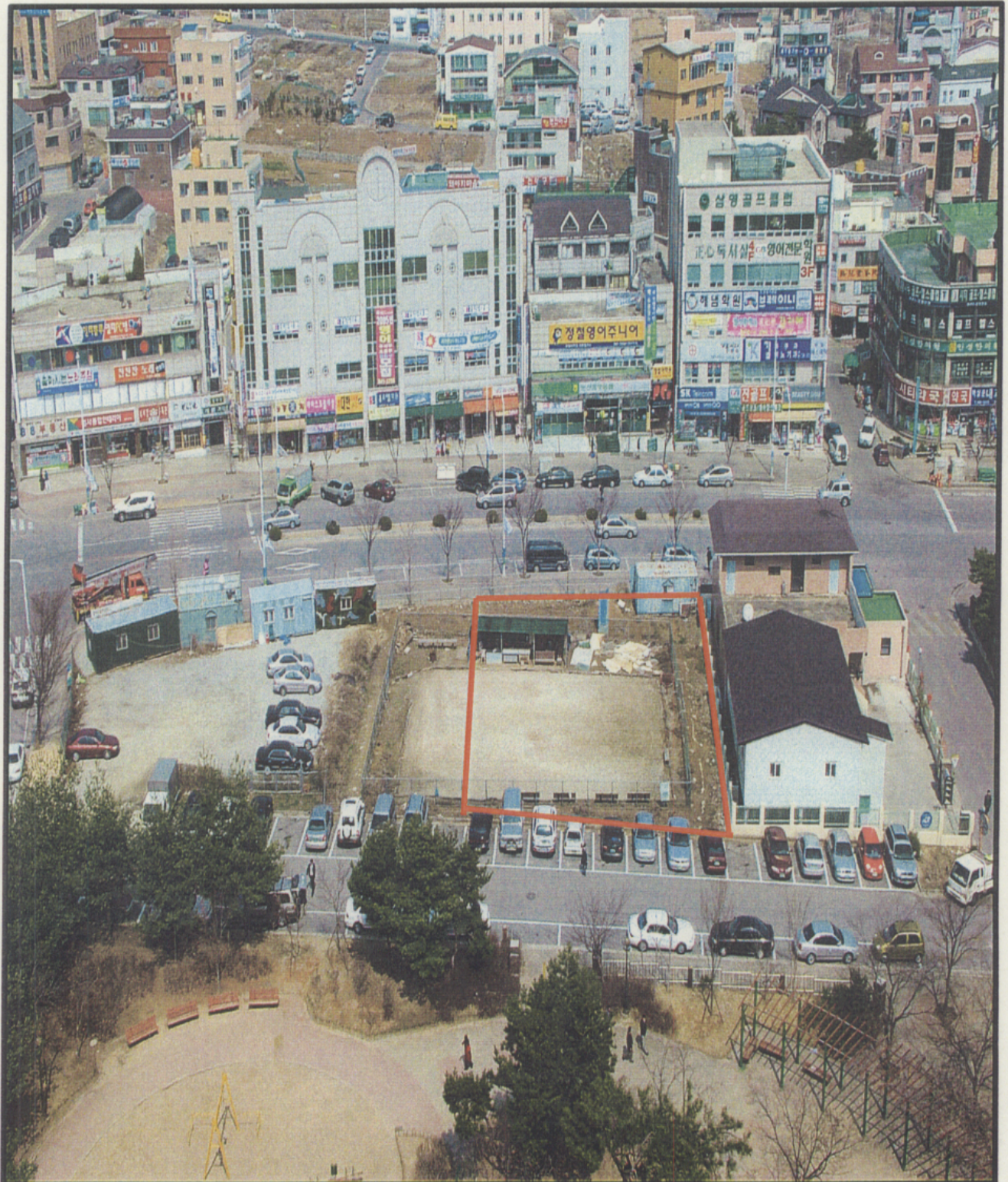
2. 부지매입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취득대상 수 량 (부지면적)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대상자	비고
	구 분	소 재 지						
기 존	2건		2건 (222,381)	16,100,000				
	1	두마면 엄사리 278	1건 (744)	200,000	2005	두마면 분소 신축 부지매입	계룡시장	기승인
	2	두마면 유동리 산39-1 일원(83필지)	1건 (221,637)	15,900,000	2005	복합문화시설 신축 부지매입	계룡시장	기승인
변 경	2건		2건 (29,608.3)	8,365,400				
	1	금암동 180-1	1건 (998.3)	453,600	2005	금암동사무소 신 축	계룡시장	신규 매입
	2	두마면 엄사리 324-1 일원(24필지)	1건 (28,610)	7,911,800	2005	화요장터 및 주차장시설 공원조성등	계룡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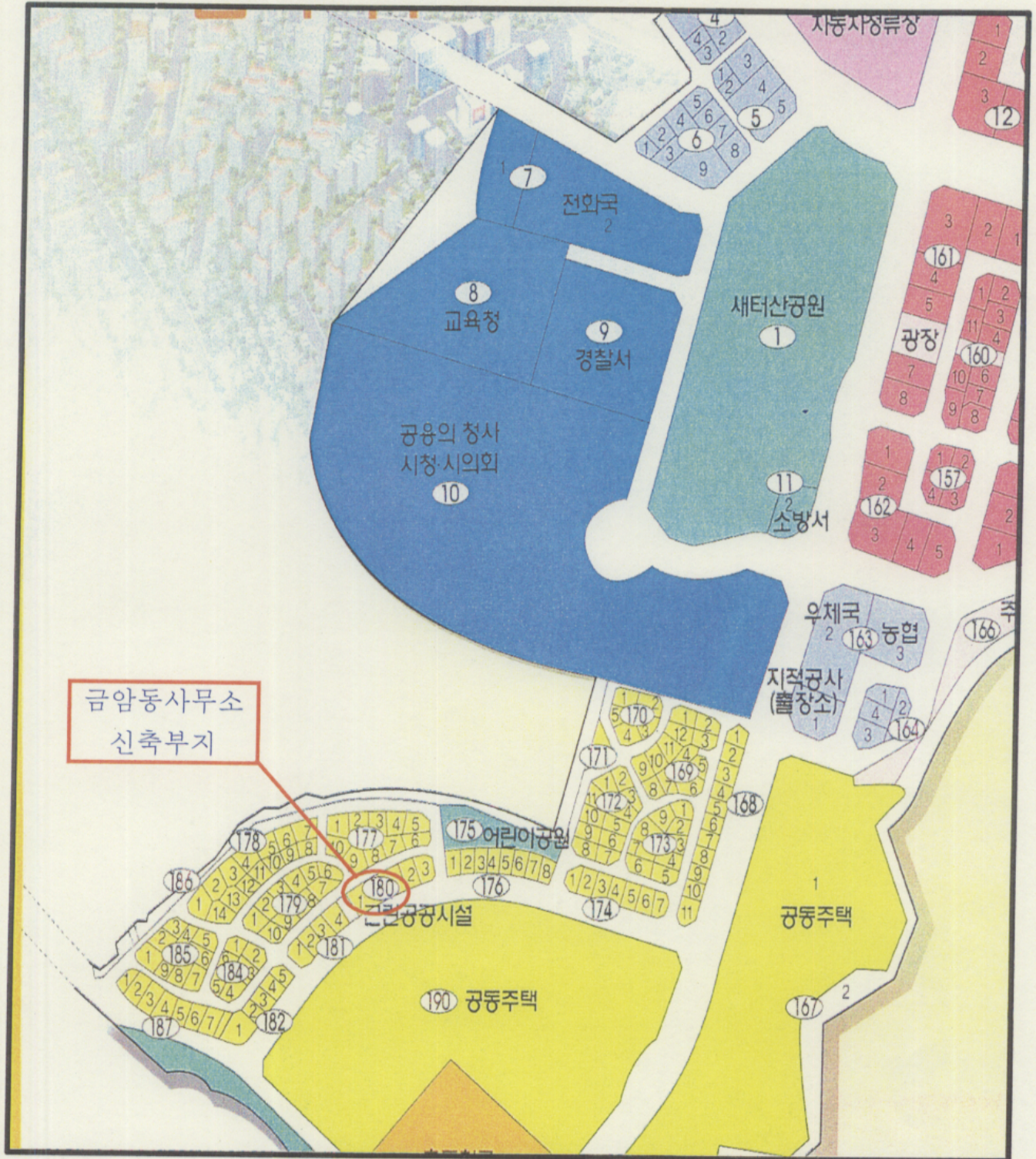
□두마면사무소 분소 신축부지 위치도

○엄사리 278-3번지 225평(744.5m²)



□ 금암동사무소 신축부지 위치도

○ 금암동 180-1번지, 302평(998.3m²)



□엄사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부지 위치도

○ 엄사리 324번지 일원 22필지 2,587평(8,553m²)



○ 근린공원용지 산12-1등 2필지 6,066평(20,057m²)

